

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(제3조의3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라.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령	행정처분의 기준	
	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
가.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	영 제2조의3제1항 제1호	운영정지 3개월	운영정지 6개월
나.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	영 제2조의3제1항 제2호	운영정지 3개월	운영정지 6개월
다.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영 제2조의3제1항 제3호	운영정지 4개월	운영정지 8개월
라. 영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영 제2조의3제1항 제4호	운영정지 2개월	운영정지 4개월
마. 영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영 제2조의3제1항 제5호	운영정지 2개월	운영정지 4개월

비고: 시정명령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

1. 제2호 개별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: 2개월
2. 제2호 개별기준 라목 및 마목의 경우: 1개월